

제4기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21~'23)

- 친환경차 · 선박 분야 -



CONTENTS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 현황 ('21~'23)

※ 해당 자료는 '21~'23년 內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 및 회신 받은 내용과, '23년도 3월 소관부처를 통해 이행현황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친환경차 · 선박 분야 (3건)

- 선박 내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인증기준 부재
-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소화기 비치 및 안전점검 기준 마련
- 전기차 화재 발생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 안전기준 개정

선박 내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인증기준 부재

친환경차·선박 분야

애로내용

연료절감 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성적서를 받으려면 연료절감 장치에 관하여 기준 및 인증체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별도의 평가기준이나 인증체계가 부재하여 성적서 발급이 어려움

건의결과



친환경 선박 기자재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하고,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기자재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기자재 관련 인증기준과 인센티브 방안(공공선박 우선적용 등)을 마련

*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2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개선/파급효과



- 구체적인 인증기준 마련으로 국내기업의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술개발 의욕 고취
- 미래 글로벌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술수준 선도에 기여
- 배출저감장치 장착 선박 대상 입자상물질 약 60%이상 저감 기대

신원융합혁신 업무즈만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소화기 비치 및 안전점검 기준 마련

친환경차·선박 분야

애로내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소화장치 비치 여부 및 안전점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개발되어 있는 소화장치가 있음에도 비치하지 못함에 따라,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 발생

건의결과



특정 소화설비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 관계기관 간 검증 후,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 기준 제·개정 등에 따라 충전시설 운영 허용

* 소화기의 진압 효과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 특정 소화설비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 소관기관 간 검토 후,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기준 제·개정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 예정(~'24.12)

소관부처: 환경부

신원융합혁신 업무즈만

전기차 화재 발생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 안전기준 개정

친환경차 · 선박 분야

애로내용

해당 기준에서 화재의 유형과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여,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건의결과



현재 소화기로는 전기차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기 안전 기준을 개정한다고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건의 내용 수용 곤란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소관부처: 소방청

 산업융합촉진 ombudsman

 산업융합촉진
ombudsman

※ (참고)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에서는
융합·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규제개선 확정 건에 대해서도 이행 현황 및 기업 애로해소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애로해소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670-9050" / "hyelim0507@kitech.re.kr"으로 문의
또는 <https://www.oico.kr/>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융합촉진 ombudsman